

미래창조과학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 · 부담 기준

구분	대기업	증전기업 (대기업·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중소기업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미래창조과학부(정부)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A)	내용 신출예시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최대)100,000,000원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최대)120,000,000원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최대)150,000,000원
기업부담액 총액(B) (B=총연구개발비-A)	내용 신출예시	총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 (최소)100,000,000원	총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 (최소)80,000,000원	총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 (최소)50,000,000원
기업부담액 중 현금부담액 (C=B*부담비율이상)	내용 신출예시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B*15%이상) (최소)15,000,000원 이상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B*13%이상) (최소)10,400,000원 이상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B*10%이상) (최소)5,000,000원 이상
기업부담액 중 현물부담액 (D) (D=B-C)	내용 신출예시	기업부담액 총액-현금부담액 (최대)85,000,000원	기업부담액 총액-현금부담액 (최대)69,600,000원	기업부담액 총액-현금부담액 (최대)45,000,000원
현물부담액 중 인건비(E)	내용 신출예시	현물부담액의 50퍼센트이내(D*50%이내) (최대)42,500,000원	현물부담액의 70퍼센트이내(D*70%이내) (최대)48,720,000원	기준없음
현물부담액 중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F) (D-E)*부담비율	내용 신출예시	기업의 현물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F)의 50퍼센트 이내((D-E)*50%이내) (최대)21,250,000원	기업의 현물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F)의 70퍼센트 이내((D-E)*50%이내) (최대)14,666,000원	기준없음
현물부담액 중 제료비 및 시락물제작에 필요한 부품비(G) 기업의 현물부담액 중 인건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내용 신출예시	기업의 현물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F)의 50퍼센트 이상((D-E)*50%이상) (최소)21,250,000원	기업의 현물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F)의 30퍼센트 이상((D-E)*30%이상) (최소)6,264,000원	기준없음

* 신출예시는 총연구개발비를 2억원으로 가정하여 제시